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”로 한다.

안 제2조중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”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중 “조경시설”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각각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6조(우선순위) ①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년도, 세대수, 사업의 긴급성,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(이하 “승용차요일제”라 한다)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사항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할 경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안 제6조를 제7조 하고 동조제2항중 “15인”을 “17인”하며, 동조 제4항제2호중 “2인”을 “4인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중 “조경분야”를 삭제한다.